

2026

수의사

수의법규

엠북 농수산법규

공부혁명!
mbook.kr

- ◆ PDF 전자책
- ◆ 법, 시행령/시행규칙(일부) 종합
- ◆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
- ◆ 6시간 완성

도서명 : 수의사 수의법규

ISBN : 979-11-7393-089-8

발간일 : 2025-10-12

형식 : 전자책(PDF)

저자 : 김병연 교수

출판사 : 엠북

홈페이지 : <https://www.mbook.kr/>

이메일 : by4782@gmail.com

정가 : 27,000원



수의사 수의법규

[목차]

제1편 수의사법(p3)

제2편 축산물위생관리법(p29)

제3편 가축전염병예방법(p76)

제4편 동물보호법(p136)

제5편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p200~256)

[비고]

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

검은색은 법

보라색은 시행령

갈색은 시행규칙

붉은색은 시행예정

제1편 수의사법

(이하 법)

[목차]

제1장 총칙

제2장 수의사

제2장의2 동물보건사

제3장 동물병원

제3장의2 동물진료법인

제4장 대한수의사회

제5장 감독

제6장 보칙

제7장 벌칙

[약어]

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부령은 농림축산식품부령

사유없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시험은 수의사 국가시험

자격시험은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처방시스템은 수의사처방관리시스템

의약품은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제1장 총칙

1~3조

1. 목적

- 수의사 기능과 수의업무에 필요한 사항 규정
- 동물 건강/복지 증진, 축산업 발전,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

2. 정의

가. 수의사는 수의업무를 담당하는, 장관 면허 받은 자

나. 동물은 소, 말, 돼지, 양, 개, 토끼, 고양이, 조류, 꿀벌, 수생동물 및 다음 동물

- 노새, 당나귀
- 친칠라, 링크, 사슴, 메추리, 꿩, 비둘기
- 시험용 동물
- 이외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다. 동물진료업(이하 진료업)은 동물 진료(사체 검안 포함), 질병 예방

라.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내 수의사 지도 하 동물 간호, 진료 보조하는, 장관의 자격인정 받은 자

마. 동물병원(이하 병원)은 진료업 하는 장소로서 신고한 진료기관

3. 수의사 직무

- 동물 진료/보건, 축산물 위생 검사

4. 동물의료 육성/발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가) 장관은

- 5년마다 수립/시행
-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 수립/시행

나) 내용

- 정책목표, 추진방향
- 지원체계 구축/개선
- 전문인력 양성/활용

제2장 수의사

4~16조

1. 면허

- 수의사가 되려면 국가시험 합격 후 장관 면허 받아야 함

2. 결격사유

가) 정신질환자와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예외)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 직무할 수 있다고 인정시

나) 피성년/피한정 후견인

다) 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의료법, 약사법, 식품위생법,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의제), 면제되지 않은 자

3. 면허의 등록

- 장관은 면허대장에 등록하고 면허증 발급

- 면허증은 다른 자에 빌려주거나 빌리거나, 이를 알선못함

4. 국가시험

가. 매년 장관이 시행

- 동물 진료에 필요한 수의학과 수의사로서 갖추어야 할 공중위생 지식과 기능에 대해 실시

- 장관은 시험 관리 능력 있는, 수의업무 전문 행정기관에 관리 맡길 수 있다

나. 응시자격

1) 결격사유 없는 다음 사람

a) 수의학 전공 대학(수의학과 설치 대학 수의학과 포함) 졸업하고 수의학사 학위 받은 자

- 6개월내 졸업해 학위 받을 자 포함

b) 외국에서 상기 해당 학교(장관 고시 인정기준 해당 학교)를 졸업하고 그 국가의 수의사 면허 받은 자

2) 졸업예정자는 해당 기간에 학위 받지 못하면 처음부터 응시자격 없음 간주

다. 수험자의 부정행위

- 부정한 방법으로 응시, 시험에서 부정행위시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

- 시험 정지나 합격 무효 후 두 번까지 응시못함

5. 무면허 진료행위의 금지

- 수의사 아니면 동물 진료못함

(예외)

가) 수산질병관리사 면허 받은 자가 수산생물 진료

나) 수의학 전공 대학(수의학과 설치 대학 수의학과 포함)에서 수의학 전공 학생이

- 수의사 자격 가진 지도교수 지시/감독 받아 전공 실습 진료행위

- 수의사 자격 가진 지도교수나 동물진료업 종사 수의사 지시/감독 받아 축산 농가,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에서 봉사활동으로 하는 진료

다) 축산 농가에서 자기가 사육하는,

- 허가나 등록 대상인 가축사업의 가축, 장관 고시 가축 진료

라) 도서/벽지 이웃 사육 동물을 비업무로 무상 진료

마) 부상당한 동물 응급처치

6. 진료의 거부 금지

- 진료업 하는 수의사가 동물 진료 요구받은 때 사유없이 거부못함

7. 진단서 등

가) 수의사는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하지 않고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처방전(이하 진단서등) 발급 또는 의약품 처방/투약 못함.

- 처방전은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 포함

- 직접 진료나 검안한 수의사가 부득이하게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 같은 병원에 종사하는 다른 수의사가 진료부 등에 의해 발급 가능

나) 진료 중 폐사시 발급하는 폐사 진단서는 다른 수의사에게서 발급받을 수 있다

다) 수의사는 직접 진료,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등 발급 요구받은 때 사유없이 거부못함

라) 장관에 신고한 축산농장에 상시고용된 수의사와 허가받은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는 농장, 동물원, 수족관 동물에 투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처방전 발급 가능

8.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의 발급 등

가. 수의사(축산농장, 동물원, 수족관에 상시고용된 수의사 포함)

1) 의약품 투약 필요시 처방전 발급

2) 처방시스템을 통해 처방전 발급

- 전산장애, 출장 진료, 응급 수술/처치로 처방시스템을 통해 발급 못할 때 수기로 작성해 발급하고 부득이한 사유 종료 3일내 처방전을 처방시스템에 등록

나. 수의사는 본인이 직접 의약품 처방, 조제, 투약시 처방전 발급 불요

- 처방시스템에 다음 입력

1) 입력 연월일, 유효기간(7일내)

2) 처방 대상 동물 이름, 종류, 성별, 연령, 체중, 임신 여부

3) 동물병원, 축산농장 명칭,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4) 의약품 명칭, 성분명, 용량, 용법, 처방일수(30일내), 판매 수량

5) 동물소유자등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6) 입력하는 수의사 성명, 면허번호

다. 처방전을 발급한 수의사는 의약품을 조제해 판매하는 자가 처방전에 표시된 명칭, 용법, 용량 등 문의시 즉시 응답

(예외)

- 응급 진료 중

- 수술, 처치 중

- 문의에 응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있는 때

9. 장관은 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처방시스템 구축/운영 요

10. 수의사는 진료부나 검안부를 갖추고 진료, 검안한 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가. 기재 사항

1) 공통

- 동물 품종, 성별, 특징, 연령
- 진료/검안 연월일
- 동물소유자등 성명, 주소

2) 진료부

- 병명, 주요 증상
- 치료방법(처방/처치)
- 사용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품명, 수량
- 동물등록번호(등록한 동물만 해당)

3) 검안부

- 폐사 연월일(추정 연월일), 살처분 연월일
- 폐사/살처분 원인, 장소
- 사체 상태
- 주요 소견

나. 보존기간은 1년

다.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보관 가능

1. 수술등증대진료(이하 증대진료)에 관한 설명

: 수의사는 생명, 신체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 있는 증대진료(전신마취 동반 내부장기/뼈/관절 수술, 전신마취 동반 수혈) 시,

가) 진료 전 **동물소유자등**(동물 소유자/관리자, 이하 **소유자등**)에 다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 받음

- 동물에 발생,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 중대진료의 필요성, 방법, 내용
- 전형적으로 예상되는 후유증, 부작용
- 중대진료 전후 소유자등 준수 사항

나) 설명/동의 절차로 중대진료가 지체되면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 우려시 중대진료 후 설명하고 동의 받을 수 있다

2. 신고

- 수의사는 최초 면허 받은 후 3년마다 대한수의사회에 실태, 취업상황(근무지 변경 포함) 신고

3. 진료기술의 보호

- 수의사의 진료행위에 대해 법,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간섭못함

4. 수의사는 진료행위에 필요한 **기구**, 약품, 시설, 재료를 **우선 공급** 받을 권리
(Copyright) 공부혁명 엠북(mbook.kr)

제2장의2 동물보건사

1. 자격

- : 동물보건사가 되려면 다음 자로서 자격시험에 합격 후 장관의 자격인정 받아야 함
- 가) 장관의 평가인증 받은 전문대나 같은 수준 이상 학교 동물 간호 학과

졸업(자격시험 응시일부터 6개월내 졸업이 예정된 자 포함)

- 입학 당시 평가인증 받은 학교에 입학한 자로서 장관 고시 동물 간호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로 봄
- 나) 고교 졸업자나 같은 수준의 학력 있는 자로서 장관의 평가인증 받은 평생교육기관 고교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 교육과정 이수 후 동물 간호 1년 이상
- 다) 장관 인정 외국 동물 간호 면허나 자격

2. 자격시험은 매년 장관이 시행

- 가) 시험 관리 능력 있는, 장관 허가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 장관 인정 전문기관에 시험 관리 위탁하고 관리 예산 보조 가능
- 나) 장관은 시험일 90일 전 홈페이지 등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 공고
- 다) 시험과목
 - 기초 동물보건학
 - 예방 동물보건학
 - 임상 동물보건학
 -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 라) 방법: 필기시험
- 마) 합격자: 각 과목 40점 이상 및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3. 양성기관의 평가인증

- 가) 동물보건사 양성과정 운영 학교나 교육기관(이하 양성기관)은 장관의 평가인증 받을 수 있다
- 나) 기준